

중요무형문화재 보존 전승의 과제

任 敦 姬

(東國大 教授 民俗學)

任 章 赫

(文化財管理局 學藝研究官)

차 례

I. 서론	3. 심의
II. 무형문화재 제도의 배경 및 의의	4. 기록보존
III. 무형문화재 제도의 범위 및 관리기구	V.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
IV.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과 인정	VI. 무형문화재의 보급 선양
1. 발굴	VII. 외국의 무형문화재 관리
2. 지정을 위한 조사	VIII. 결론

I. 서론

근년 들어 무형문화재에 대해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으로부터도 관심사가 되고 있다. 80년대 들어 경제성장은 생활의 안정과 윤택함을 가져다주었고 반면에 소외되어 왔던 전통문화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어쩌면 외국에서도 경제성장과 함께 자연스럽게 뿌리찾기 운동이 전개되는 것과 비교한다면 자연스러운 것일지도 모른다. 흔히 21세기를 문화산업의 시대라 일컫는 점을 감안할 때 무형문화재는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전승·보존되어야 함은 물론 문화재의 소프트웨어라 할 수 있기에 활용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다.

전통문화예술을 무형문화재라는 개념으로 정책상 보호하는 나라는 일본, 대만, 한국 등 3개국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국에서도 보기 드문 무형문화재 관리제도에 대해 일부학자는 무용론(無用論)을 주장하기도 한다. 1960년대 이후 근대화의 물결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과 관리제도에 의해 많은 무형문화재가 보호되어 오늘날에도 전승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악의 위상제고에도 공헌하였다 할 수 있고 장래에도 무형문화재의 가치와 활용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논문은 현행 무형문화재 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 문제점과 보완이어야 할 과제를 서술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함에 목적을 둔 것으로 한국유네스코위

원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안하였다.

II. 무형문화재제도의 배경 및 의의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인구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경사회였으나 1960년대부터 산업화로 인하여 많은 인구가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는 현상을 가져왔다.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미국을 중심한 서구문화의 영향이 모든 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서구화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삶이 급격하게 사라지게 되었고 전통적인 삶의 표현이었던 전통 예술도 같이 사라지는 입장에 놓여 있었다. 무형문화재 제도의 도입은 이러한 현대문명에 밀려 사라져 가는 전통 문화 중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을 지정하여 보존 전승시킴으로써 민족문화의 맥을 잇도록 하는데 있다.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문화창조를 조성하고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며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무형문화재란 음악, 무용, 연극, 놀이, 의식, 무예 등과 관련된 예술과 공예, 음식 등 각종 생활용품을 제조하는 기술로서 역사상 또는 학술, 예술상 가치가 크고 향토색이 현저한 무형의 문화적 소산을 일컫는다. 이러한 무형문화재는 일정한 형체가 없이 전승되어 온 예술이나 기술이므로 사람에게 의해서 실연될 때에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거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다. 무형문화재를 보존, 전승시킨다는 것은 그 예술이나 기술을 전승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형문화재를 지정할 때에는 그 예술이나 기술을 보유한 자 중 우수한 자를 함께 인정하여 당해 무형문화재를 전승시키도록 하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라고 하나 속칭 “인간문화재”란 명칭이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다.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무형문화재의 개념은 획기적인 것이었다. 대체로 문화재라고 하면 과거의 시대의 건축물과 같은 고정적인 가시적인 것이며 대체로 예술성이 뛰어난 것으로 인식하고 또 그런 것을 보존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무형문화재의 의미는 특기할 만하다. 무형문화재는 건축물과 같이 영속성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항상 가변적인 것이기 때문에 위의 고정적인 문화재의 개념으로 보면 생소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무형문화재로 간주되는 것 중 한국의 독특한 현상은 민속적인 무형문화재의 지정이 다수를 포함한다는 사실이다. 민속적인 것을 문화재로 개념화한 것은 발상의 전환인 것이다.

민속은 대부분의 사회에서 고급적인 예술에 비해 열등한 것, 그리고 유치한 것으로 여겨져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속예술은 특히 아무도 배우고 전승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사라지기가 매우 쉬운 문화현상들이다. 또한 민속은 과거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화, 산업화 그리고 현대화 과정 중에서 그 생활현장이 사라지면 같이 사라지게 마련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무형문화재 제도와 같은 인위적인 보존 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많은 전통공예 기술이나 민속예술 행위는 사라져 갔으리라 믿는다.

III. 무형문화재 제도의 법규 및 관리기구

무형문화재 제도는 정부에 의해 시도되었고 관리되었다. 1962년 1월 10일 문화재보

호법이 공포되고 그 법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있다. 물론 그후에 여러 차례 새로운 상황에 맞게 법이 개정되었다. 무형문화재에는 국가지정인 중요문화재와 시도 지정문화재가 있다.

무형문화재 관리에 관한 업무는 문화체육부 산하 문화재관리국 무형문화재과, 국립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실, 비영리단체인 문화재보호재단, 그리고 문화체육부장관 자문기구인 문화재위원회와 문화재전문위원회 등에서 담당해한다. 무형문화재과에서는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발굴, 조사 심의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 그리고 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인정과 해제, 전수교육보조자 선정, 전수교육지원, 공개행사지원 등 무형문화재에 관한 행정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문화재관리국 산하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실은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의 기록물제작, 비지정 무형문화재 또는 시, 도지정 무형문화재의 조사연구와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무형문화재는 특성상 원형보존이 힘들고 실연내용의 일부는 가변성이 있으므로 기록물을 제작하여 이를 보관하고 학술자료와 홍보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고 있다. 1965년부터 기록 영화를 제작하기 시작하여 매해 2편 정도씩 제작해 왔는데 초기에는 흑백 필름으로 제작하였으나 70년대에 들어 컬러로 제작하고 있으며 이미 제작된 영상물이 있다하더라도 내용을 보충하여 재제작하기도 한다. 영상물제작은 문화재관리국 무형문화재과에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제작해 왔으나 내용이 충실하고 학술적 이용가치가 높은 영상물이 되도록 1995년부터는 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실에서 매년 4편 정도씩 제작하고 있다. 기록영상물은 비디오로 복제하여 국공립 도서관, 관련단체 등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있다. 음악 분야의 무형문화재는 음반물로 제작 보관한다. 전 과정을 완창토록 하여 원판에 수록하고 이를 편집하여 CD, 카세트 테이프를 제작하여 배포한다.

문화체육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문화재위원회를 두고 있다. 현재 활동중인 대학교수, 학자 가운데 가장 권위있는 전문가들 중에서 위촉된 문화재위원들과 전공분야별 세분화된 문화재전문위원들이 위촉되어 있다. 문화재위원들은 주로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인정관리등 주요사항에 관하여 조사, 심의하고 문화재전문위원은 문화재 자료조사, 연구 보고서 작성 등 일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협조하고 있다. 이들 문화재위원 및 문화재전문위원은 대부분 비상근직으로서 필요시에만 일정한 수당을 받고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국가 문화재위원회중 무형문화재 관련 분과위원회에는 문화재위원 10명, 문화재전문위원 1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IV.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과 인정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는 문화재의 발굴, 지정신청, 조사, 그리고 심의의 절차를 거쳐 지정 받게 된다. 지정받은 후에는 그 문화재에 대한 기록을 남겨 보존한다.

1. 발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무형문화재의 발굴은 시·도의 추천을 받거나 전국민속 경연대회, 전승공예대전 등 전통문화 관련 행사에서 수상하거나 특별히 돋보인 경우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심층조사를 실시하게 하기도 하고, 시·도지사가 중요무형문화

재 지정신청에 따라 지정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지정에 관한 취지를 보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무형문화재의 명칭, 유래 및 전설, 내용 및 특징

○무형문화재의 사진, 녹음물 및 기타 기록물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성별, 주소, 이력서, 사진(보유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설립연월일과 설립을 증명하는 자료, 대표자의 성명, 주소, 사진 및 이력서)

○무형문화재의 보호, 관리에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기타 지정에 필요한 사항

2. 지정을 위한 조사

문화체육부장관은 발굴된 무형문화재중 보존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것에 대하여 문화재위원, 문화재전문위원 또는 사계 전문가로 하여금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조사내용에는 문화재의 유래, 내용, 특징, 현상에 관한 설명, 명칭, 전승지역 및 당해 문화재의 기, 예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한 제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사자는 사진 녹음물 및 기타 기록물, 관계자료 등을 갖추어 조사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고, 이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심 의

문화체육부장관은 무형문화재 지정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동 문화재가 역사상, 학술상, 예술상 가치가 크고 향토색이 현저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다. 심의시에는 조사자가 문화재위원회에 참석하여 조사내용과 지정가치여부를 설명하고 문화재위원의 질의에 응답하도록 한다. 심의대상의 무형문화재가 지정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소의회를 거쳐 1차 심의후 문화재위원회에서 2차 심의하기도 한다.

무형문화재지정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된다.

- 1) 민족생활의 변천과 발달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 2) 발생연대가 비교적 오래고 그 시대의 특색을 지닌 것.
- 3) 형식과 기법이 전통적인 것.
- 4) 예술상 가치가 특출한 것.
- 5) 학술연구상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 6) 향토적으로나 그 밖의 특색이 현저한 것.
- 7) 소멸될 우려가 많아 문화적 가치가 상실되기 쉬운 것 등이다.

문화재보호법의 지정기준에 의해 현재 다음과 같은 무형문화재들이 지정되고 있다.

- 1) 연극
인형극, 가면극

2) 음악

제례악, 연례악, 대취타, 가곡, 가사 또는 시조의 영창, 산조, 농악, 잡가, 민요, 무악, 범패

3) 무용

의식무, 정재무, 탈춤, 민속무

4) 공예기술

도자기공예, 피모공예, 금속공예, 골각공예, 나전칠기공예, 제지공예, 목공예, 건축공예, 지물공예, 직물공예, 염색공예, 옥석공예, 수·미듭공예, 복식공예, 악기 공예, 초공예, 죽공예, 무구공예,

5) 기타의식, 놀이, 무예, 음식제조 등.

6)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한 예능의 성립 또는 구성상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기법이나 그 용구 등의 제작 수리 등의 기술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할 때는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원형대로 취득, 보유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로 인정하여 당해 문화재가 전승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연극, 의식 등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의 성질상 개인적으로는 실현할 수 없거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보유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단체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이 단절되지 않도록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계속 보완하여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하거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와 함께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별(중요무형문화재), 지정번호(지정순서에 따라 붙인 번호), 명칭, 보유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보유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년월일과 대표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등을 고시하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지정현황은 다음과 같다.

(‘97.11 현재)

分野 區分		藝能種目					技能種目		計	
		音樂	舞蹈	演劇	놀이와 樣式	武藝	工藝 技術	飲食		
指定種目		17	7	14	23	1	39	2	103	
保有團體		11	2	13	25	-	-	-	51	
傳承者	保有者	42	10	34	36	1	55	4	182	
	補助者	保有者候補	35	4	10	14	0	8	2	73
		助教	47	10	31	35	0	20	1	144
		補助者	22	4	11	17	1	17	1	73
	履修者		582	198	296	273	5	164	12	1,530
	傳受獎學生		16	4	-	-	2	67	2	91
計		744	230	382	375	9	331	22	2093	

4. 기록보존

중요무형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위해 그 실연내용을 영화, 음반, 책자 등으로 제작하여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문화재관리국장은 중요무형문화재마다 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당해 무형문화재의 연혁, 내용, 관리상황, 보유자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하고 녹음물, 촬영물, 악보, 대본 및 보유자의 사진을 첨부한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에는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다. 첫째는 어떤 것이 보존 가치있는 문화재인가 하는 기준의 문제이다. 한국의 경우 과거 “예술품”이라 하면 청자 등의 소위 고급예술만을 보존 가치로 여겨왔다. 민속예술의 경우 가치성을 인정 받기는 커녕 천시하는 풍조였다. 그러나 학문의 발달에 의해 민속예술도 중요한 민족 자산이라는 인식이 들게 되고 급기야는 보존하여야 한다는 판단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특정의 문화현상이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 학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정에 있어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에서도 과거 민속학자에 의해 소중한 문화재로 인식이 된 문화재가 다른 학자에 의해 그 가치가 인정되지 않아 지정되지 않은 결과 소멸된 경우도 있다. 또한 1960년대 산업화를 지상목표로 하였던 당시 국가발전의 걸림돌이라고 국가에 의해 미신이라고 간주되어 타파되고 파괴되어진 무속의 신당들이 지금에 와서는 보존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가져오고 있다.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발굴 및 지정의 문제에 있어 끊임없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문화재 지정에 있어서의 대표성의 문제이다. 민속 문화예술의 경우 그 문화예술성을 보유한 사람이 여럿일 경우 누가 가장 대표성이 있는가 하는 것은 주관적인 평가의 여지가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끊임없는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두 학자의 보고서에 의해서 결정되기보다는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학자, 지역 주민 대표, 예술가)참여하여 공개된 자료에 의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결정한다면 좀더 객관성을 띠는 지정이 이루어지리라 본다. 현재 무형문화재 위원은 총 10명으로서 민요, 국악, 복식, 민속연극, 목·금속공예, 무속, 도자기, 각 분야에 전문가 한 명씩이 배정되어 있다. 이들이 실질적으로 문화재지정의 심사를 결정하는데 결국 한사람의 전문가의 견해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각 전문분야의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해당 종목의 문화재 지정업무의 심사권한을 배분하여야 할 것이다. 무형문화재의 지정시에는 해당문화재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소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지정을 위한 조사도 한두 사람에게 위촉하기보다는 전문분야의 여러 명의 학자들에게 위촉하여 다양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이 더 공정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심의에는 참여하지 않는 조사와 심의가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에 대한 학자들의 논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재의 박제화 현상이다. 어떤 특정의 문화재가 지정이 되면 그 방식이 원형으로 간주되어 변화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민속 예능의 경우 탈춤을 예로 들어 보면 그 탈춤은 때와 장소에 따라 대사 내용도 달라지고 공연시간도 가감되는 것이 속성이다. 그러나 한번 지정이 되면 그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야 하기 때문에 민속의 본질에 어긋난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비판이다. 그러나 무형문화재 제도를 옹호하는 학자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급변하는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라도 보존하지 않으면 사라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변이다. 어떤 학자는 이러한 문화재를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비유하였다. 즉 건강히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상적이겠지만 명이 걸린 사람을 방치하면 죽게되니 부득이 입원시켜서 보호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그밖에 다른 견해는 박물관에 전시된 유형문화재가 한시대의 산물이지만 거기에서 후세 사람들이 영감을 얻는 것처럼 무형문화재도 한시대의 산물로서 인정하고 거기에서 재창조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탈춤은 1970년대, 80년대에 대학가에서 반체제의 이념을 주장하는 민중극의 모델이 되었고, 농악은 현재 젊은이들에게 가장 각광을 받는 사물놀이의 모델이 되고 있다.

무형문화재 지정의 또 하나의 문제는 문화재의 공연문제이다. 제한된 시간에 공연을 하게되면 부득이 농촌 마을에서 자연적인 상황에서 행하여졌던 연희에 비해 시간을 단축하여야하고 편집을 하게 된다. 따라서 극적인 부분을 인위적으로 정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공연이 매우 상업적이 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민속의 모습이 대부분 아마추어적이고 세련미보다는 소박하고 어설피폰데에 그 매력이 있는데 공연예술화 되는 것도 또 한 가지의 문제점으로 등장한다.

또 다른 우려는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의 서열화 문제이다. 특히 민속예술의 경우 민속마을에서의 예술은 다양하고 서로의 우열의 개념이 희박하게 존재하였다. 그러나 한 번 지정되면 그 종목만이 기준이 되고 다른 종류의 예술행위는 소멸하는 점도 문제점이다. 보다 다양한 민속예술을 보존시키려면 지정과 비지정의 관계를 초월하여 다같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방식을 강구하여야 하겠다.

V.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

중요무형문화재 제도의 또 하나의 특성은 지정에 그치지 않고 전승하는데 제도적 배려를 한데 있다. 대부분의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들은 인정 당시 매우 고령이므로 그들이 사망하게 되면 곧 그 예술과 기술의 기법도 사라지게 되고 또한 현대생활과 유리되어 있는 전통예술은 젊은이들이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 기술의 전승에 특히 배려를 하게 되었다. 즉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들의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기술 및 예술을 후세에 전하게 함으로써 보존하려는 의도이다. 이 전승제도로는 전수생 교육, 전수회관제공, 그리고 보유자들의 기능의 공개행사 개최 등 여러 가지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1. 전수생 교육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전수생을 발굴하여 전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전수생 중에서 우수한 학생은 중요문화재 보유자나 보유단체가 추천하여 전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월 1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전수장학생의 선정기준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6개월 이상 전수교육을 받고 있는 자로서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에 소질이 있는 자, 중요무형문화재와 관련 있는 분야에서 1년 이상 활동한 자로서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전승하고자 하는 자이다. 전수 교육기간은 5년을 기본으로 하되 전수생의 학습능력에 따라 보유자의 판단하에 그 기간을 증감할 수 있다.

2. 이수제도

전수생 교육을 받은 사람중에서 그 해당 분야의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또는 보유단체가 심사하여 그 기능 또는 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면 이수자로 선정된다. 이 이수자들중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보조자로 선정된다. 전수교육보조자는 월 25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1997년 11월 1일 현재 전수교육상황은 전수교육보조자 290명, 전수생 382명으로 총 672명이며, 현재까지 전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모두 1,530명이다.

3. 전수 교육 공간의 설치

한편 국가에서는 전수교육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시, 도와 공동부담으로 1973년부터 매년 1~2개의 전수교육관을 건립하여 현재 35개소가 건립되었다. 전수교육관은 당해 중요무형문화재가 전승되는 지역에 건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종목보다는 단체종목에 대하여, 그리고 여러 종목이 전승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건립하고 있다. 또한 서울에 전수교육, 공연, 판매, 홍보 등 다목적 성격을 지닌 종합전수회관이 건립중

에 있다.

무형문화재 제도가 전통예술의 지정에만 그치지 않고 현대 젊은이들에게 전통예술을 전승하게 하기 위한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수 교육의 문제점은 전통예술을 전수 받은 이수자들이 계속적으로 그 기예를 연마하여야 하는데 생계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애써서 전승받은 기예를 유지 못하고 포기하는데 있다. 현재 이수자중 소수의 전수교육보조자로 선정된 사람은 월25만원의 보조를 받으면서 기능을 젊은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 외의 대부분의 이수자들은 전혀 재정적인 도움이 없다. 따라서 그들은 생계를 찾아 다른 직업에 종사하게 되므로 애써 배운 기능을 연마할 기회가 적고 결국은 많은 이수자들이 중단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물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데는 정부의 전폭적인 재정적 지원이 따르면 해결되겠지만 재정적 지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다양한 제도적 보완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가지 방안으로서 제한된 재정을 좀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융통성 있게 배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것이다.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종목중 사회의 필요성이나 인기가 많은 분야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분야가 있다. 예로 공예 쪽은 국가의 재정적 지원없이도 국가가 지정하는 “인간문화재”(Human Cultural Assets)라는 호칭과 그 이수자라는 경력을 갖고서 생산된 공예품 판매로 생계의 유지가 보장되는 종목이 있다. 반면 그렇지 않은 종목도 있다. 정부에서는 모든 종목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재정적 지원에서 종목의 필요에 따른 차별적 지원을 한다면 한정된 재원으로 좀더 효과적인 전승 방안이 이루어지리라 본다.

또하나의 전수교육에서의 문제점은 교육 평가에 대한 객관성의 결여이다. 현재 전수교육을 받은 전수생이 이수자로 되기 위하여는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주관적인 결정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 이러한 폐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전수생의 기예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마련함이 바람직하다. 공개적인 석상에서 관련분야의 여러명의 전문가들이 평가하도록 하여야 공신력이 있는 전승 제도가 되리라 본다.

4. 공개행사

무형문화재는 실연자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창작된 것이 아니고 오랜 역사속에 민족이 향유하여 전승된 문화유산이기에 모든 사람이 공유 공감할 수 있도록 일반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또한 무형문화재 지정자나 단체가 얼마나 충실히 그 예술성을 연마하고 유지하나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하여 1년에 한번 공개 행사를 하도록 한다.

공개행사는 그 무형문화재의 특성에 따라 예능종목과 공예종목으로 구분하여 그 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예능종목은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비롯한 전승자들이 그 전승지역에서 매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공개행사를 치르도록 한다.

공예종목의 공개행사는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전수교육 보조자, 전수생들이 제작한 공예품을 한 자리에 모아 전시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전시관에서 실연이 가능한 종목은 직접 실연을 하기도 한다. 이 중요무형문화재 공예작품전은 서울뿐만아니라 지방을 순회하여 열린다.

이러한 공개행사를 통해 당해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들의 기, 예능이

제대로 보존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전수교육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문화재위원 및 문화재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공개내용에 대하여 심사하게 한다. 만약에 지정된 내용과 달리 공연할 경우에는 시정하도록 지시한다.

이러한 공개행사는 관계전문가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관람할 수 있도록 한다.

VI. 무형문화재의 보급선양

국가에서 지정, 관리하고 있는 중요무형문화재는 음악, 무용, 연극, 의식, 공예기술 등 전통문화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는 현대문명에 밀려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 새로운 문화 창조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중요무형문화재를 국민들에게 널리 보급하고 그 가치와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사업을 한다. 그 방법으로는 국민들이 중요무형문화재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기록 보존용으로 영화, 비디오테이프, 음반, 카세트테이프, 책자 등으로 제작하여 이를 국, 공립 도서관 및 박물관, 기타 공공기관 등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중요무형문화재를 외국에 소개하기 위해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 해외 공연, 전시회 등을 알선해 주고 이를 지도, 감독하기도 한다. 이러한 해외공연등은 주로 외국의 초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국가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출국에 다른 행정지원과 약간의 재정지원을 해준다.

또한,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자체적으로 각급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 그 학교 학생들에게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기도 하고 각종 행사에 초청되어 공연을 하기도 한다.

공예분야의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들은 대개 그 보유기능이 생업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이므로 자신의 작품을 제작, 판매함으로써 중요무형문화재의 보급, 선양에 기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가와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보급, 선양을 담당하는 데에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 즉, 국가는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사업을 중심으로 행정행위를 해야 하는데 비해 문화재 보급선양 사업은 경우에 따라 개개인의 사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줄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개인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문화재관리국이나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직접 보급, 선양사업을 하는 경우 상설공연이나 상설전시회 개최, 전통공예품을 종합적으로 취급하는 판매장 운영 등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문화재관리국은 그 산하에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라는 비영리법인체를 두고 있다. 문화재관리국은 한국문화재보호재단으로 하여금 문화재 보급선양사업을 실시토록 하고 그 업무를 지도, 감독한다.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설립목적은 문화재의 보호, 보존, 보급 및 활용과 전통생활 문화의 창조적 개발을 통해 우리의 민족문화를 보급선양하기 위한 것이다. 그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들의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를 보조하여 공연·전시회 등을 개최한다. 중요무형문화재가 예능종목인 경우 그 공개행사는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들이 그 전승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연1회 이상 갖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같은 종목의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도 또는 보유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예능을 비교

하고 진흥을 도모하는 한편 일반 국민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중요무형문화재를 한 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필요도 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 봄·가을로 연 2~3회에 걸쳐 중요무형문화재 합동 발표공연을 개최한다.

또한 공예종목의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를 위해서는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들의 전통공예작품을 한 자리에 모아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 때에 전시실에서 중요무형문화재의 실연이 가능한 종목에 대해서는 그 보유자들이 직접 실연을 해보임으로써 공개내용을 더욱 실감나게 한다. 그리고 일반 전통공예인들의 작품을 공모하여 그 중 우수한 작품에 대해서는 상을 주고 그 작품들을 일정기간동안 전시하는 전통공예대전을 개최한다. 이 공모전을 통해 기능이 우수한 자를 발굴하여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로 인정할 수도 있다. 한편 문화재에 관심이 있는 직장인이나 일반인을 위해 전통문화학교, 전통문화에 대한 연구강좌, 전문강좌, 청소년지도교사 강좌 등을 개설하고 있다. 일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애호 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문화재를 소재로 한 백일장, 사생대회, 사진공모전 등을 개최하고 우수한 작품에 대하여 상을 주고 전시회를 개최하여 일반인들에게 공개한다. 또한 문화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모집하여 국내외의 문화유적지를 답사하기도 하고 전통공예품을 복제하거나 문화재 관계 책자를 발간하여 일반인들에게 판매하기도 한다.

무형문화재의 선양과 전승은 대개 위와 같이 자원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좀더 강력하게 전승이 되고자 할 때는 학교교육의 교재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즉 민요는 음악시간에 교과과목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탈춤은 무용시간에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로 대학에서 한국 무용을 전공할 때는 무형문화재보유자로부터 이수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항목에서 전수생을 확보하고 후계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나 이런 학교교육과 무관한 항목에서는 인기와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후계자를 구하기가 어렵다.

문화재 선양에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것은 학교교육외에 방송매체의 영향이 막강하다. 현재 한국 방송매체는 음악의 경우 서양음악 위주로 방송하고 있다. 국악의 경우 방송되는 비율도 적을 뿐만 아니라 혹 방영된다 하더라도 시청률이 낮은 심야시간대에 편성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이 많이 시청하는 시간대에 편성하거나 아니면 지금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열린음악회”같은 프로그램에 일정한 편수의 국악을 할당해서 방영하게 하는 배려가 있어야 할 줄로 안다.

VII. 외국의 무형문화재 관리

무형문화재 제도를 가장 먼저 실시한 일본은 1950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어 약 92명의 보유자가 인정되어 있고 이들에게 매년 약 1,600만원(200만엔)의 전승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한다. 일본의 무형문화재 제도와 한국의 무형문화재 제도를 직접 비교하는데에는 무리가 있다. 일본은 중요무형문화재와 중요민속무형문화재를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는 구분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전승자나 관계자들은 일본의 중요무형문화재 제도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선호하고 있다. 우리에게 비해 보유자에 대해 상당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든지 또는 보유자에 대한 제도적 예의가

각별하다는 것이다.

일본의 무형문화재 관리상에 있어서도 전승자의 고령화와 지방도시민 감소에 따른 전승자 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보유자 사망 시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지정도 동시에 해제시키고 있어 전승보존과 지원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형문화재 관리의 기본은 전승의 맥이 끊어지도록 하지 않는 것이기에 보유자에게 전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전수교육을 보존하는 전수교육보조자나 이수자를 양성토록 하는 것이 우리 무형문화재 관리의 특성이기도 하다.

보유자 중심의 일본 무형문화재 관리제도와 달리 보유자 및 전수교육보조자와 전수장 학생에 대한 지원이나 전수교육관 건립, 각종 공연 및 전승장비 제작·지원 등을 모두 합한다면 일본의 지원책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한국, 일본, 대만의 무형문화재 관리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한 국	일 본	대 만
관 련 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자산보존법
문 화 재 명	중요무형문화재	중요무형문화재	중요민속예술
실연자명칭(속칭)	保有法(“인간문화재”)	保有者(“인각국보”)	藝師
관 리 기 관	문화체육부 문화재관리국	문화청 문화재보호국	교육부
지 정 기 준	예능, 공예기술, 놀이, 의식, 음식 등 기타	예능·공예기술	예술·기술
특 징	전수교육실시	보유자중심관리 무형문화재와 민속무 형문화재를 구분관리	학습교육을 통한 전승 ·보급, 관광지구의 민족예술 보존

대만의 무형문화재에 대한 제도적 특징 학교교육과의 연계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의 교과과정에 전통문화수업이 포함되어 있어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난이도에 따라 기·예능을 익힐 수 있는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점이다. 일본 또한 문부성산하의 문화청 문화재보호국에서 관리하고 있기에 교육정책에 반영하기 쉽게 문화재관리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교육청에서 업무를 맡고 있기에 교육적 기대효과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교육정책과 문화재정책과의 연계는 우리의 문화재 관리 정책에 있어 커다란 과제로 남아있다. 문화재 보급·선양은 국민 교육적 또는 사회 교육적인 기대효과를 노리는 것이며 나아가 민족교육의 일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의 문화재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앞으로 남은 과제이기도 하다. 이미 중요무형문화재보유단체와 전승지의 중·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 참여를 유도하고 청소년에게 지연성을 심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그다지 활성화는 되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VIII. 결 론

중요무형문화재 제도를 소개하고 그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점도 아울러 지적하였다. 중요무형문화재 제도는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서 생산된 소산이다. 한국이 급격한 사회적, 문화적 변혁에 놓여 있었고 그것에 따른 전통적인 생활양식의 변화는 전통적인 문

화유산을 사라지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전통사회에서 민속 예능에 대한 사회적인 천시는 이런 민속 예능이 사라지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960년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를 갖고 있던 정부가 주도적으로 전통문화를 보존 전승하게 된 배경이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무형문화재를 보존 전승함으로써 그 보존이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권위적인 국가가 문화재로 인정함으로써 사회적, 문화적으로 천시되었던 보유자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고 무형문화재에 대한 국민의 긍지도 높아진 것 또한 공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라져갔을 문화재를 보존한 것은 가장 큰 공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의 정치 경제적 상황도 그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정치상황도 중앙집권제에서 지방자치체로의 전환을 가져오고 경제적인 성장도 괄목할 정도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형문화재 제도도 중앙 정부의 관리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그리고 민간단체로의 이양이 더욱 더 바람직한 관리라고 볼 수 있다. 그럼으로써 지방적인 특성이 있는 문화재를 개발 보존, 육성할 수 있고 각 지역에서 다양한 그리고 경쟁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라고 본다.

우리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상황이 다른 국가에서의 전통문화의 보존 전승의 전략은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무형문화재 지정 관련 법적체도가 없는 국가에서는 당연히 정부의 무형문화재 관리기관도 없을 것이다.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여 무형문화재관리제도를 마련하는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전통문화예술을 관리지원하는 기관의 산하단체에 전통예술 공예인 선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무형문화재 지정제도와 같이 운영하는 것이 좋을 듯하며 예산은 기금을 마련하여 소요경비를 충당하는 것도 고려할만 하다.

또한 지방자치권이 발달한 국가에서는 중앙 정부 주도의 문화재 보존 제도보다는 각 지역자치에서의 무형문화재 보호제도가 더 효과적이라 본다. 미국의 경우 대개의 주 정부에서는 민속학을 전공한 학자를 주민속전문가(State Folklorist)로 고용하여 그 주의 민속적인 문화의 발굴 보존, 그리고 전시를 전담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각 전문가가 한 지역을 오랜 기간동안 연구함으로써 그 지역의 문화의 모든 면을 망라하여 체계있게 정리하고 소개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특성을 부각시키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전승과 함께 앞으로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는 현대 사회성원들이 전통문화를 접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데 있다. 일본의 전통적인 예능 전용극장인 국립극장과 같은 상설무대를 마련하여 항상 전통예술을 공연한다면 내국인은 물론, 관광 온 외국인들도 그 지역의 전통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본다. 또한 전통예술은 현대인에게는 생소한 내용이 많으므로 단순히 공연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설명까지를 곁들인 공연을 한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1. 서윤석 : 1984 「중요무형문화재 보존 20년」, 『문화재』 17호
2. 문화재관리국 : 1993 『외국문화재보호법령집』
3. 문화재관리국 : 1994 『중요무형문화재 업무편람』
4. 임장혁 : 1994 「문화재보호법의 한·일 비교-민속관련 문화재를 중심으로」 『비교민속학』